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광업소 선산부가 진폐요양을 받은 후 무장해 판정을 받고 직접사인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91-186호 91. 5. 20 기각)

재 결 서

재심사청구인

성명 : 권○○

주소 : 창원시 대원동

원처분청 :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황○○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속 : ○○광업소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0. 7. 3.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피재근로자 “황○○”(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황○○”(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광업소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4. 6. 4~1985. 11. 30. 진폐요양을 받은 후 무장해 판정을 받고 1990. 1. 7. 직접사인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바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이 산재법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처분청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진폐와 사인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피재자의 모(母)인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진폐 치료 종결후에도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진폐가 악화되어 심부전증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여부에 있다하였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4. 22. 권○○)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5. 2. 총주지방노동사무소장)
3. 소견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1990. 6. 23 가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 의사 윤○○)
4. 사망진단서(1990. 1. 7. 의사 김○○)
5. 자문의 소견서(1990. 7. 2. 김○○)
6. 산재심사관 결정서(1990. 9. 27. 조○○)
7.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중 1984. 6. 4~1985. 11. 30.까지 상주 동서병원에서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요양을 받은 후 무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 1990. 1. 7. 직접사인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여 원처분청은 사인과 진폐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재자가 1984. 6. 4.~1985. 11. 30.까지 진폐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진폐증 환자가 다른 질병도 없이 진폐증이 악화되어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피재자의 사망경위를 보면 피재자는 ○○광업소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탄광, ○○광업소, ○○광업소

에서 1969. 1월부터 1981. 12월까지 7년 6개월간 광부로 근무한바 있으며 1984. 6. 4~1985. 11. 30.까지는 상주 동서병원에서 진폐로 요양을 받았고 1986. 3. 8. 및 1987. 10. 28일 2차례에 걸쳐 다시 진폐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무장해로 판정을 받은바 있고 그 이후 진폐로 인한 요양을 한적이 없다가 1990. 1. 7. 창원시 내동 소재 승남 의원에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진폐환자 등록카드, 사망진단서에서 확인되고 둘째:진폐와 직접사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원처분청 자문의는 “진폐증을 장기간 앓게 되면 심부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재자의 경우 1986. 3. 8. 이후 무장해 판정된 경우이고 심부전증이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이고 심부전증의 유발요인은 선천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간장질환 등의 많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진폐로 인한 심부전증의 사망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함” 이고 가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은 “심부전증이란 신체가 조직내에 혈액량이 감소되거나 각 장기에 많은 양의 혈액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혈액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의 유발요인은 선천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등 간장질환을 비롯하여 많은 질환들이 심부전증을 유발시킬수 있으며 진폐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폐증이 심부전증을 일으킬수 있을 것이나 다만 본 사망에서는 진폐증이외의 다른 장기의 심부전증을 일으킬만한 질환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상으로 보아 이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재자는 1968. 3. 8. 정밀진단 결과 무장해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1987. 10. 28. 진폐정밀검진 미해당자로서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으므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심부전증을 유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의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광업소 채탄부가 근무중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여 폐결핵등으로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91-212호 91. 5. 20 기각)

재 결 서

재심사청구인

성명 : 최○○ 외 2인

주소 : 중구 장충동

원처분청 :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최○○

주소 : 중구 장충동

소속 : ○○광업소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최○○ 외 2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영월지방노동 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0. 12. 6.자 청구인 등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 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최○○”(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광업소 소속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1. 1. 26.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여 폐결핵 등으로 요양하다가 1987. 12. 26. 사망하여 보험 급여 수급권자인 청구인 등이 산재법 시행령 제16 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처분청에 유족보 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피재자 의 사인이 진폐증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 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 등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 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 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등은 다시 불복하면서 진폐증 11 급 판정 받고 퇴사한 후 진폐증이 기인한 폐결핵 등으로 요양하다가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 으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 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 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 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 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5. . 최○○ 외 2인)
2. 답변서(1991. 5. 16. 원처분청)
3. 심사결정서 사본(1991. 3. 20. 심사관: 변○○)
4.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통보 공문 사본(1990. 12. 6. 원처분청)
5.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1990. 10. 24. 최○○ 외 2인)
6. 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90. 12. 3. 원처분청)
7. 사체검안서 사본(1987. 12. 26. 성인한의원)
8. 확인서 사본(1990. 11. 1. 성인한의원)
9. 소견서 사본(1990. 12. . 원처분청 자문의)
10. 진단서 사본(1990. 11. 27. 도티기념병원)

11. 인우보증서 사본(1990. 9. . 남○○ 외 4명)
 12.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1. 1. 26.자 진폐장해 11급의 판정을 받고 퇴사
 한 후 1987. 12. 16. 사망하였는바 피재자는 서울
 중구보건소에 폐결핵중증 환자로 등록되어 1986.
 6. 13~1987. 6월까지 결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
 고 1987. 10. 14. 도타기념병원에서 X-선 및 객
 담검사 결과 중증폐결핵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는바
 1987. 12. 26.자 성인한의원 사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진폐증”의 소견은

있으나 “피재자는 본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가족진술상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여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다만 사망전 심한
 호흡곤란과 해수가 심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 주요원인중 하나였다고 추측된다”고 확
 인하고 있어 동 사체검안 소견은 신빙성이 없고 따
 라서 사인자체가 미상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진폐증
 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로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뿐 이를 취소할 이
 유가 없다. ♣

제 14 차 아세아 산업보건학회 안내

개최지 : 중국 북경시 국제회의장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 Beichendong S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1, People's Republic of China

개최일 : 1994년 10월 15~17일(3일간)

**사무국 : Prof. Changgi Zou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 Chinese Academy of
 Preventive Medicine**

29 Nan Wei Road, Beijing 100050, P. R. China

Tel : (861)301-4323

Fax : (861)301-4323

등 록 : 학회비 4월 30일 후

본 인 us\$ 450

동반자 us\$ 250

호텔예약마감 8월 15일(us\$ 70-75/N)

기타 자세한 것은 가톨릭의대 이승한 교수(전화 02-590-1233) 또는 당 협회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